

부산고등법원(창원) 2019. 12. 19 선고 2019나11381 판결 [구상금 등 청구의 소]

재판경과

부산고등법원(창원) 2019. 12. 19 선고 2019나11381 판결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9. 4. 18 선고 2017가합10516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동인

담당변호사 이해림, 최영현, 김진오

피고, 피항소인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강 담당변호사 이원하

변론 종결2019. 11. 14.

판결 선고2019. 12. 19.

제1심판결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9. 4. 18. 선고 2017가합10516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이 법원에서 확장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항소비용(청구확장으로 인한 비용 포함)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60,434,402원 및 그중 239,505,127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20,929,275원에 대하여는 2010. 8. 16.부터 이 사건 2019. 11. 13.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분 송달일까지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이 법원에서 부당이득반환 또는 손해배상 청구취지를 확장하였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부당이득반환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에 관한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이 법원에서 추가한 주장과 증거를 보태어 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2. 고쳐 쓰는 부분

○ 제1심판결 7면 1행~3행의 "피고는 원고의 동의 없이 원고 명의 G조합 계좌에서 보험료를 자동이체 하여 만기환급금 15,623,103원을 임의로 수령하여 사용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위 환급금 상당액을 부당이득반환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를 "피고는 원고의 동의 없이 원고 명의의 계좌에서 2005. 10. 17.부터 2010. 8. 16.까지 매월 보험료를 무단이체하였으므로, 그 보험료 총액 20,929,275원과 이에 대한 마지막 이체일인 2010. 8. 16.부터의 지연손해금을 부당이득반환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11면 12행부터 12면 2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나. 이 사건에서 원고가 주장하는 피고의 '이득'은 원고 명의의 계좌에서 피고의 보험료로 자동이체,

즉 송금된 돈으로서, 이체(송금)라는 '급부행위'에 따른 것이지 원고의 권리에 대한 '객관적 침해'의 대가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앞서 본 급부부당이득에 관한 법리에 따라 그 자동이체가 법률상 원인 없이 이루어진 것임을 원고가 증명하여야 한다. 이는 급부행위의 원인이 될 만한 사유가 처음부터 없었음을 이유로 하는 이른바 착오 송금의 경우 그 송금이 착오로 인한 것임을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자가 주장·증명하여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이다.

위 보험료는 2005. 10. 17.부터 2010. 8. 16.까지 약 5년간 매월 자동이체 되었는데, 그 기간은 원고와 피고가 동업약정에 기초하여 이 사건 병원을 함께 운영하던 시기이고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자동이체 계좌는 원고의 개인 용도가 아니라 이 사건 병원의 운영에 사용되던 것이므로 병원의 대표원장이던 원고가 위 계좌를 통하여 입금되는 수익 및 출금되는 비용 등을 확인하고 관리하였을 것인 점, 이 사건 병원 수익금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50대 50으로 정산이 예정된 돈인 점, 이 법원의 사실조회에 대한 I조합, N조합, O조합의 각 회신에 의하면 타인 명의의 계좌에서 자동이체를 신청할 경우 예금주의 동의서가 반드시 필요한 점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제출된 모든 증거에 의하더라도 피고가 원고 몰래 무단으로 보험료를 이체하였다는 점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N조합과 O조합의 위 각 사실조회회신 내용은, 피고의 보험가입 관련 서류가 현재 보관되어 있지 않아 확인이 불가능하다는 의미일 뿐, 당시 자동이체신청에 요구되는 서류 일체를 징구한 바 없다는 뜻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청구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이 법원에서 확장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원고의 항소와 확장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재판장판사엄상필

판사남혜영

판사이효제